

정보통신산업분야와 공정경쟁

오 리 나라의 통신시장은 '80년대의 독점시대를 시작으로 '92년 국제전화사업에 경쟁이 도입된 이후 '94년 시외전화사업 및 '95년 이동전화사업, '96년 개인휴대통신(PCS) 이동전화사업, '97년 시내전화사업자의 선정, 그리고 올 4월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 역무가 개시됨으로써 통신산업은 전 분야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PCS와 이동전화, 나아가 무선호출에 이르기까지 무선통신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쟁의 도입으로 서비스간의 구분이 없는 경쟁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와 같이 통신시장이 자유화되고 국제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간의 시장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보통신 경쟁사업자간의 분쟁과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 노력과 공정경쟁 여건 및 환경조성을 위한 경쟁정책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즉, 불공정거래행위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또한 후발사업자나 신규진입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한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부당표시·광고,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사용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당국에 의한 경쟁질서의 유지는 사후적인 규제 측면이 강한 반면에 업계의 자율적인 준수는 사전적인 예방 측면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도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다음과 같은 공정경쟁준수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즉, 한국통신을 비롯하여 SK텔레콤, LG텔레콤, 데이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하나로통신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신시장의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사적인 공정경쟁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통신은 지난 '98년 5월에 공쟁경쟁 종합실무지침과 같은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임직원 교육은 물론 개인 업무별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하나로통신은 정책협력팀을 중심으로 공정경쟁 관련업무의 추진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주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분석, 사례를 추가한 휴대용 공정경쟁가이드를 제작하여 전직원에게 배포하여 공정경쟁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업무 위탁시의

직원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데이콤과 신세기통신,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은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관련법, 불공정행위 심결사례, 정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을 직무교육과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사업자들은 전사적인 공정경쟁 마인드조성을 위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경쟁 관련법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의 실천 여부를 경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에 따른 실천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정경쟁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한 직원들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직원들이 언제든지 공정경쟁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내 인터넷 및 전자게시판에 공정경쟁란을 개설·운영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은 '96년 3월부터 전화국 단위까지 공정경쟁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타 사내직원들의 공정경쟁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불공정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하나로통신은 사내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불공정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공정사례DB와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공정경쟁관련 법령들을 수록한 경쟁법령D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공정경쟁 준수를 위한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정책 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의 공정경쟁정책의 운용을 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일관성 있는 규제원칙 및 기준의 설정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규제나 공정경쟁 측면에서 관계법령의 미비나 정책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규제의 원칙과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덧붙여 관련 법규정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개별 사안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규제원칙은 기업들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의 후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 규제기능의 통합을 들 수 있다. 현재 정보통신산업의 규제관련 업무가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 분산·중복되어 있어 규제의 일관성을 어렵게 함은 물론 규제대상자들에게는 관련비용을 증폭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통신과 방송을 일원적으로 관할하는 독립규제기관이 자국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규제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정보통신 산업의 정책기능은 물론, 규제업무도 일원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